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35호 2023. 11. 1.(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31호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 변경(1차) 고시 ..... 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591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거창군 공고 제2023-1595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20
거창군 공고 제2023-1599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32
거창군 공고 제2023-1607호	노상 및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	40
거창군 공고 제2023-1613호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5
거창군 공고 제2023-1615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63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23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5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97호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과 결과 공고 .....	79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 변경(1차) 고시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일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1차)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거창군수

##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상동 아롬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인정사업	65.3억원	2021년~2023년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일원	사업면적	1,500㎡
사업시행자	거창군			
사업 필요성	쇠퇴한 원도심 지역으로 평가받는 상동마을에 복합 커뮤니티 거점 공간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 달성			
사업내용 및 효과	고령화지수가 높은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재원조달방안	국비 39.18억원, 지방비 26.12억원			
활성화계획도				

### 주민들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골목 사람이 모이는 숲골 아우터

- 사업개요
  - 위치: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1 ~ 2023(3년 간)
  - 총사업비: 65.30억원(국비 39.18억원, 지방비 26.12억원)
  - 사업규모: 지상3층(건축면적 520㎡, 연면적 1,500㎡)
  - 주요사업
    -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 / 생활SOC 복합 공급 /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위치도



### 사업 내용

[ 숲골 어울림센터(HW: 54.80억원, SW: 3.60억원, 실제 사업관리 6.90억원) ]



- 지상 3층: 공동육아 놀이체험실 207㎡ / 보육인 육아터 56㎡
- 운영관리주체: (운영관리) 상동마을관리협동조합(현, 협의회) / (협약기관) 거창군 생활나눔과
- 이용대상: 전계층, 미취학 아동(공동육아놀이체험실)



- 지상 2층: 숲골 실버문화교실 148.5㎡ / 노인 건강 증진실 및 헬스케어 108㎡
- 운영관리주체: (운영관리) 상동마을관리협동조합(현, 협의회) / (협약기관) 거창군 보건소
- 이용대상: 전계층



- 지상 1층: 경로당(기존 기능 유지) 205㎡ / 커뮤니티룸 18㎡ / 숲골카페 140㎡ / 무인택배함
- 운영관리주체: (운영관리) 상동제3경로당, 상동화북경로당 / 상동마을관리협동조합(현, 협의회) /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이용대상: 전계층, 고령층(경로당)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② 계획의 목표

비전	원도심 내 주민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생활 SOC 공급
목표	- 쇠퇴한 원도심 지역으로 평가받는 상동마을에 복합 커뮤니티 거점공간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 달성 - 본 사업을 통하여 타 지역 대비 높은 장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수성과 열악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③ 주요변경사항

###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1. 1. ~ 2023. 12.

- 변경: 2021. 1. ~ 2024. 6.(증 6개월)

## ④ 도시재생관련 서류 열람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64)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 운영기준, 이용대상자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 개정

###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운영, 위탁 신설(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을 상시 운영 원칙에서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하고 단서조항 삭제(안 제6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지정(안 제7조)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경상도 내와 부산·대구광역시 및 시군 경계지역으로 확대(안 제13조)

4. 예고기간 : 2023. 10. 27.(금) ~ 11. 16.(목)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다. 전화 055-940-3388, 팩스 055-940-3528, 이메일 hlchoil2@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항 중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시 별도 접수하여 거창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계를 접하는 시군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중전 제14조)제2항제3호 중 “교통약자서비스”를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b>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p> <p><b>제7조(이용대상자)</b>                      &lt;신설&gt;</p> <p>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p>	<p><b>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b>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24시간 상시 운영한다.</p> <p>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p> <p><b>제7조(이용대상자)</b>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p>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

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시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시 별도 접수하여 거창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운행 지역) ①**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계를 접하는 시군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

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 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4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1]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제8조 관련)**

구분	제출서류
1.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p>가. 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p> <p>나.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p> <p>다.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p> <p>라.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진단서(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p> <p>마.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p>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나) 해당 특별시 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 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

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개선(안 제33조 개정)

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개선(안 제38조 개정)

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41조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30. ~ 2023. 11. 20.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

2) 전화번호 : 055)940-3602, FAX : 055)940-3579

3) 전자우편 : jeonsj0000@korea.kr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1호 중 “건축직”을 “시설 직렬”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건축기사”를 “건축산업기사”로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하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3조(건축지도원)</b></p> <p>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li> <li>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u>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4. <u>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u></li> <li>5. <u>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u></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②~④ (생략)</p>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p>	<p><b>제33조(건축지도원)</b></p> <p>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설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li> <li>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u>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4. <u>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u></li> <li>5. <u>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li> <li>6. <u>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li> <li>7. <u>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li> </ol> <p>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p>



<p>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높이 <u>9미터</u>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p> <p>2. 높이 <u>9미터</u>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p> <p>② ~ ④ (생략)</p>	<p>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높이 <u>10미터</u>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p> <p>2. 높이 <u>10미터</u>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1미터 이상 <삭 제>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마. 삭제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

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높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우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 거창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 거 창 군 수

### 1.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양평리 매립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 일원	12,063	증)11,005	23,068	공고465호 ('92.12.24)	
변경	②	지리골 매립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거창읍 양평리 산144-4번지 일원	74,708	감)10,249	64,459	공고317호 ('99.12.15)	

####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①	양평리 매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처리시설 확대 및 대표지번 변경</li> <li>면적:기존 12,063㎡→변경 23,068㎡(증11,005㎡)</li> <li>대표지번:거창읍 양평리 341번지 일원 →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 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내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 증가</li> <li>지번 합병에 따른 대표 지번 변경</li> </ul>
변경	②	지리골 매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처리시설 감소 및 대표지번 변경</li> <li>면적:기존 74,708㎡→변경 64,459㎡(감10,249㎡)</li> <li>대표지번:거창읍 양평리 350번지 일원 → 거창읍 양평리 산144-2번지 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 면적을 양평리매립장 부지 편입 및 조성계획이 없는 일부 용지의 제외</li> <li>지번 합병에 따른 대표 지번 변경</li> </ul>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붙임 1. 의견서] 서면 제출
5. 관계도면 : [붙임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참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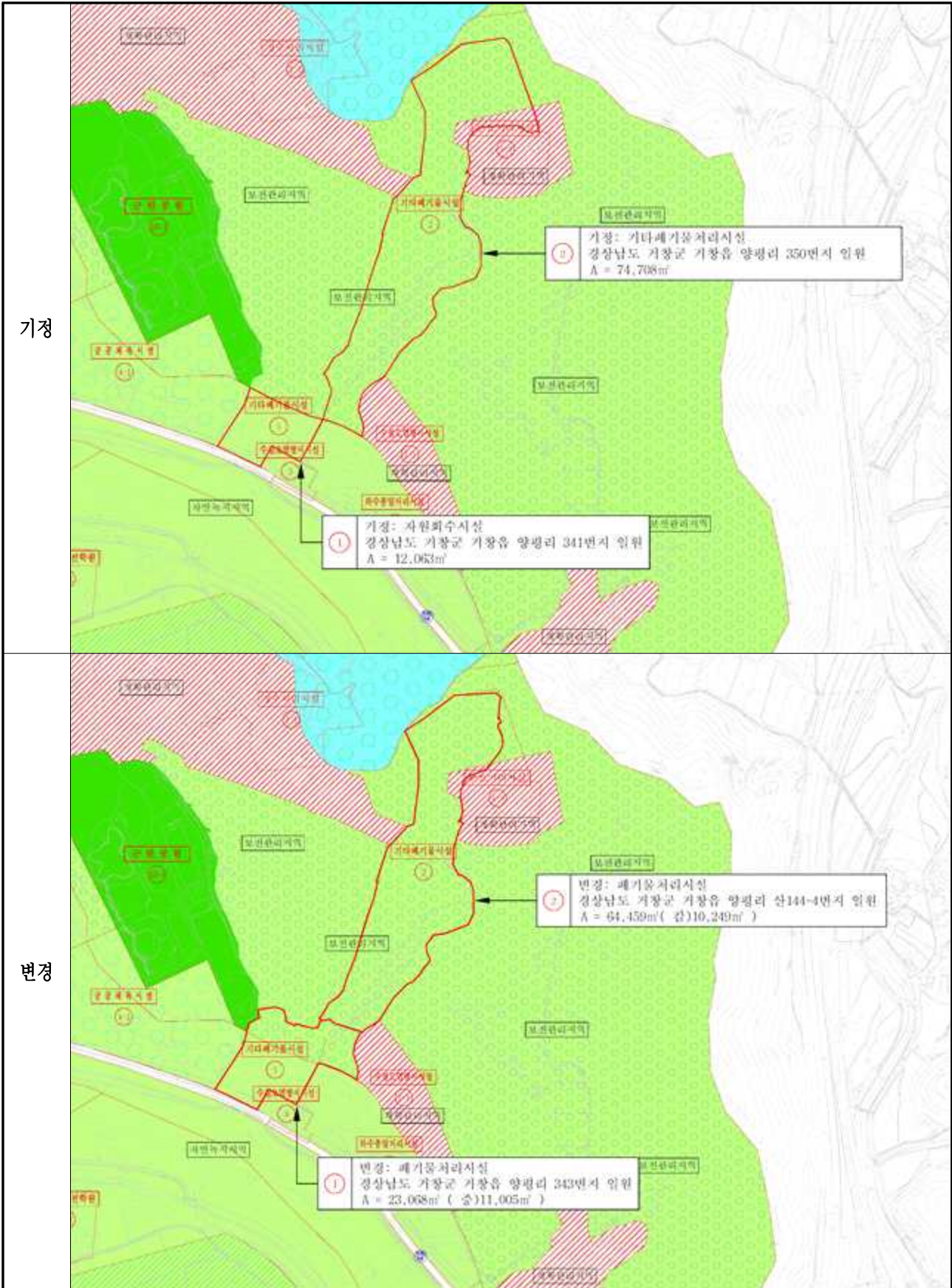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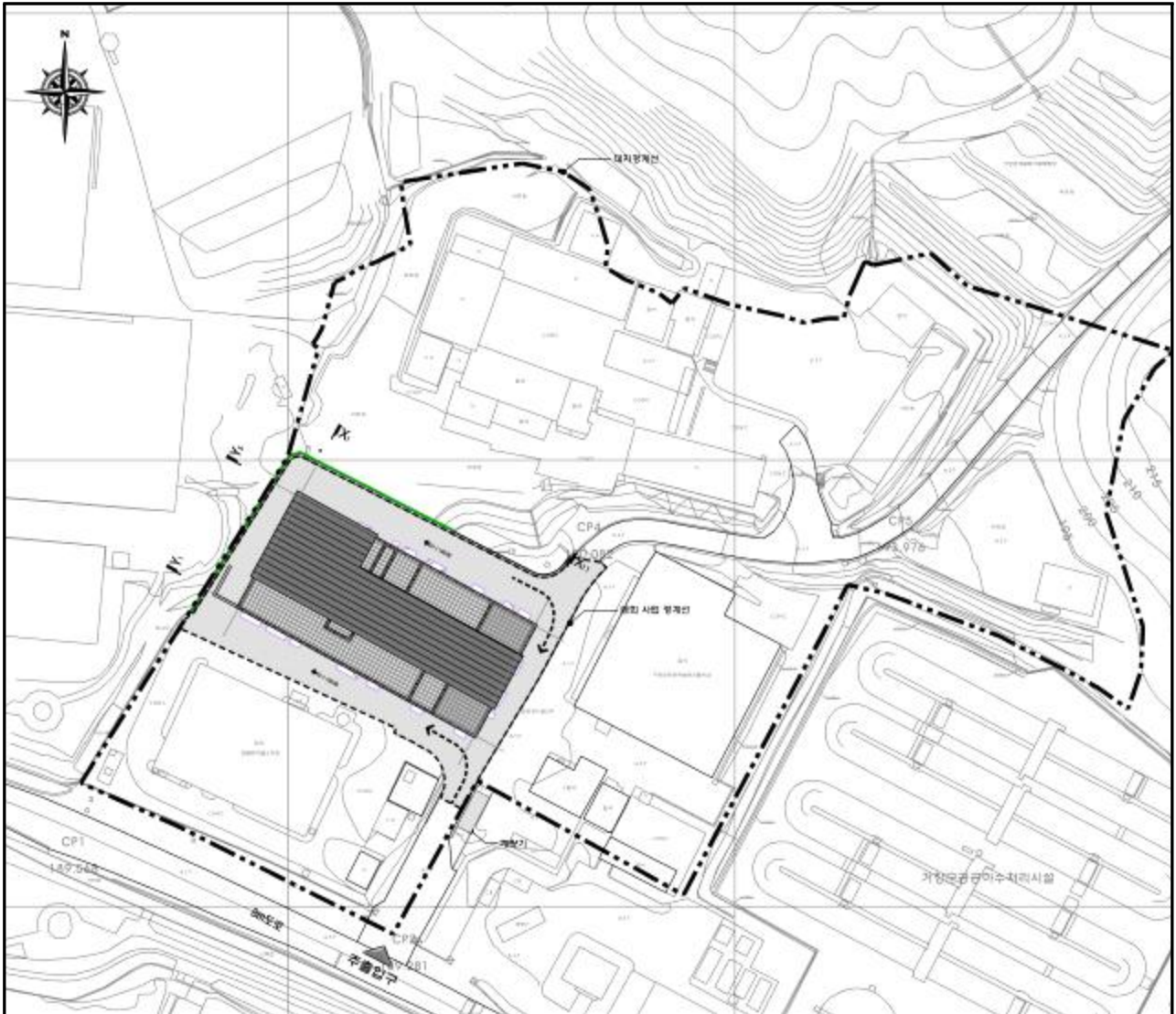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붙임 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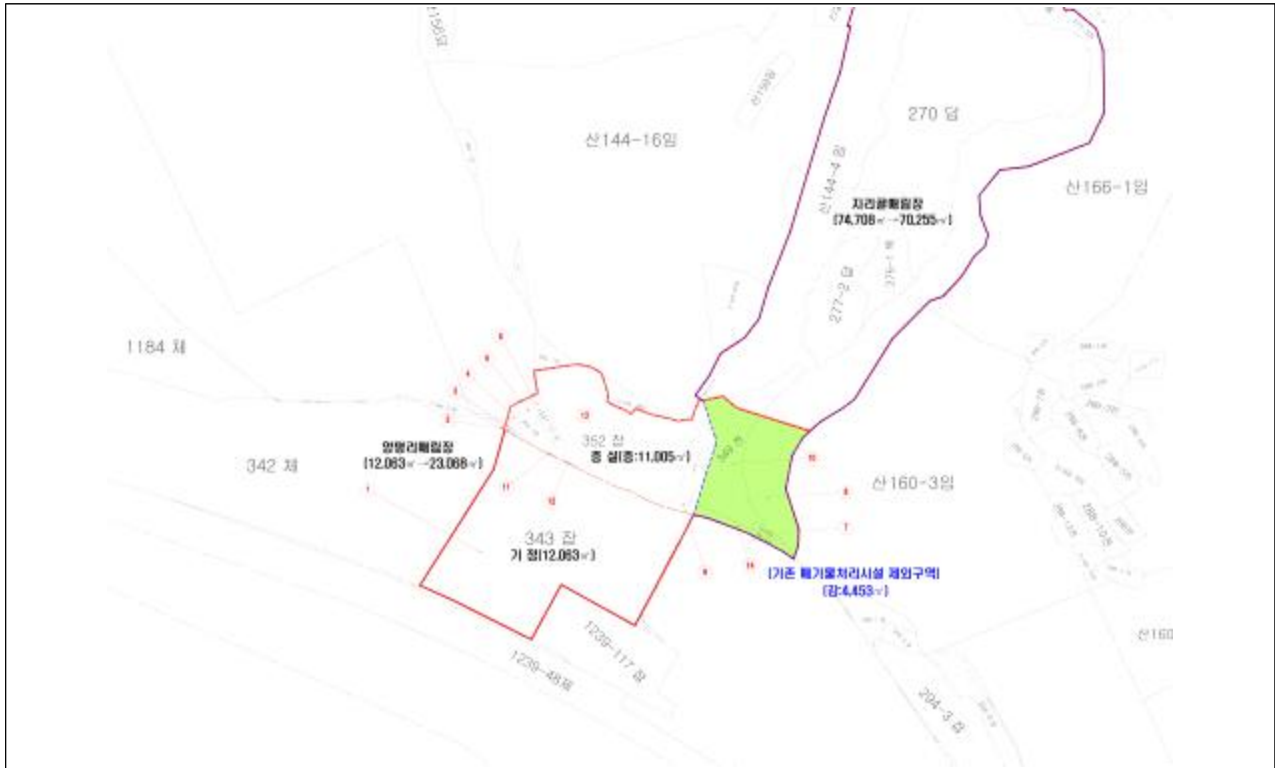


□ 시설계획 평면도



[붙임 3] 지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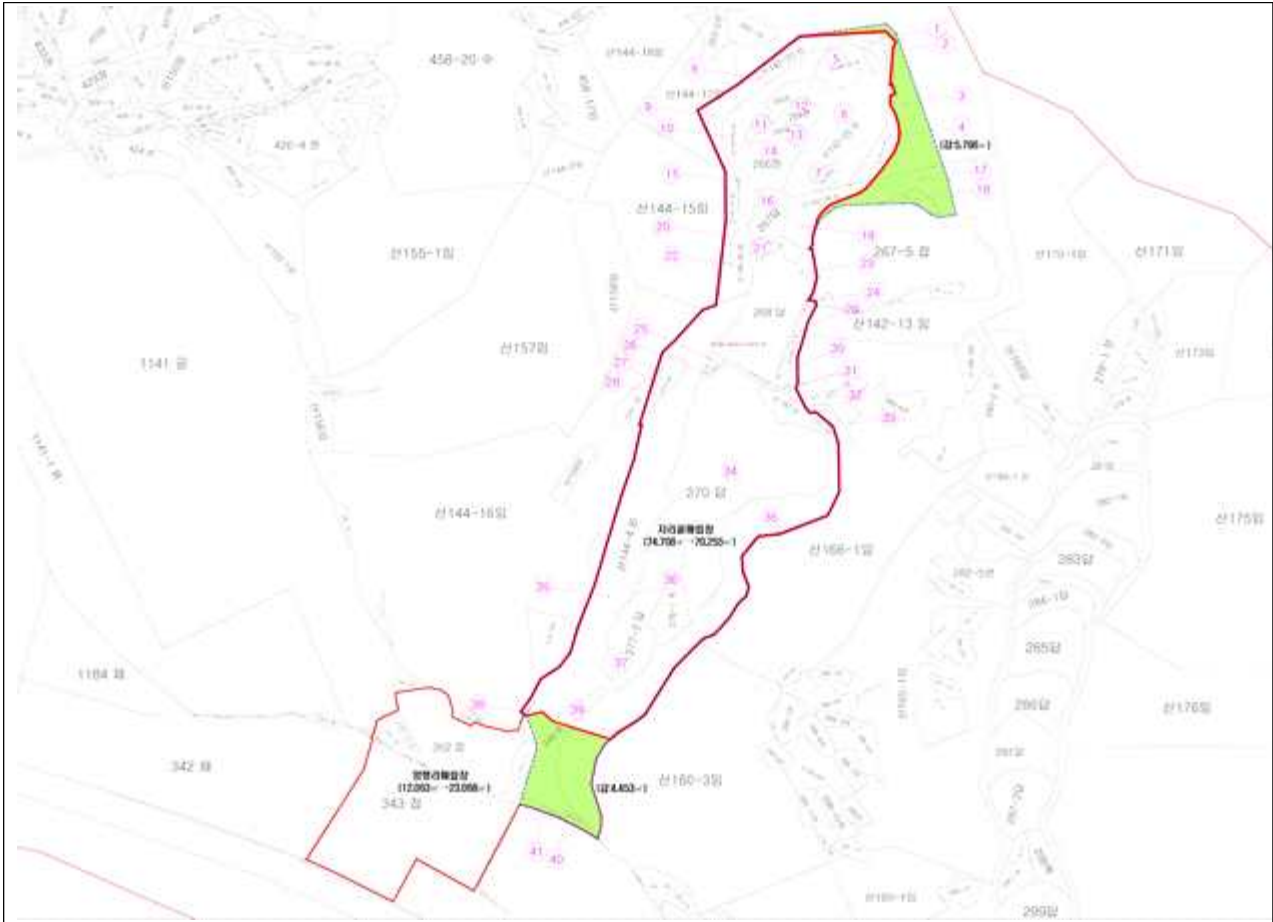
○ 양평기 매립장



[ 양평리 매립장 ] 편입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용지번호
					기정	변경			
1	거창읍 양평리	343-0	잡	12,063	12,063	12,063	거창군		1
2	거창읍 양평리	349-0	전	2,567		2,120	거창군		10
3	거창읍 양평리	352-0	잡	4,893		4,893	거창군		13
4	거창읍 양평리	354-4	천	7		7	거창군		12
5	거창읍 양평리	356-1	잡	430		430	거창군		5
6	거창읍 양평리	356-2	구	115		115	거창군		4
7	거창읍 양평리	356-3	천	8		8	거창군		11
8	거창읍 양평리	1246-9	잡	13		13	거창군		2
9	거창읍 양평리	1247-2	구	23		23	국(기획재정부)		3
10	거창읍 양평리	1247-11	구	288		288	국(농림축산식품부)		6
11	거창읍 양평리	12480	구	648		648	거창군		9
12	거창읍 양평리	산144-4	입	18,341		2,042	거창군		8
13	거창읍 양평리	289-2	구	90		90	거창군		7
14	거창읍 양평리	290-6	잡	328		328	거창군		14
합 계					12,063	23,068		중)11,005	

## ○ 지리콜 매립장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용지번호
					기정	변경			
1	거창읍 양평리	263	전	1,150	1,150	1,150	거창군		11
2	거창읍 양평리	264	전	582	582	582	거창군		12
3	거창읍 양평리	265	답	555	555	555	거창군		13
4	거창읍 양평리	266	전	1,583	1,583	1,583	거창군		14
5	거창읍 양평리	267	답	1,094	1,094	1,094	거창군		16
6	거창읍 양평리	268	답	4,726	4,726	4,726	거창군		23
7	거창읍 양평리	270	답	13,398	13,398	13,398	거창군		34
8	거창읍 양평리	349	전	2,567	2,475	447	거창군	감)2,028	39
9	거창읍 양평리	1,257	구	740	740	740	거창군		26
10	거창읍 양평리	267-1	전	565	565	565	거창군		21
11	거창읍 양평리	267-3	전	394	394	-	거창군	감)394	18
12	거창읍 양평리	268-4	답	159	159	159	거창군		24
13	거창읍 양평리	268-5	답	74	74	74	거창군		30
14	거창읍 양평리	268-6	답	167	167	167	거창군		25
15	거창읍 양평리	271-3	전	285	285	285	거창군		33
16	거창읍 양평리	273-2	전	648	648	648	거창군		28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용지번호
					기정	변경			
17	거창읍 양평리	276-1	목	2,046	2,046	2,046	거창군		36
18	거창읍 양평리	277-2	답	2,269	2,269	2,269	거창군		37
19	거창읍 양평리	289-2	답	90	90	-	거창군	감)90	40
20	거창읍 양평리	290-6	잡	328	293	-	거창군	감)293	41
21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48,061	3,230	-	김**	감)3,230	3
22	거창읍 양평리	산142-12	임	797	797	797	거창군		29
23	거창읍 양평리	산142-13	임	9,397	2,172	-	거창군	감)2,172	17
24	거창읍 양평리	산142-2	임	386	386	386	거창군		1
25	거창읍 양평리	산142-20	임	1,376	1,376	1,376	거창군		8
26	거창읍 양평리	산142-21	임	945	945	945	거창군		4
27	거창읍 양평리	산142-22	임	1,201	1,201	1,201	거창군		5
28	거창읍 양평리	산142-24	임	1,449	1,449	1,449	거창군		19
29	거창읍 양평리	산142-25	임	6,010	6,010	6,010	거창군		6
30	거창읍 양평리	산142-26	임	363	363	363	거창군		2
31	거창읍 양평리	산143	임	298	298	298	거창군		7
32	거창읍 양평리	산144-17	임	4,978	1,235	1,235	거창군		9
33	거창읍 양평리	산144-38	임	73	73	73	거창군		27
34	거창읍 양평리	산144-4	임	18,341	18,341	16,299	거창군	감)2,042	35
35	거창읍 양평리	산144-41	임	695	695	695	거창군		20
36	거창읍 양평리	산144-43	임	675	675	675	거창군		10
37	거창읍 양평리	산144-44	임	23	23	23	거창군		15
38	거창읍 양평리	산144-45	임	1,188	1,188	1,188	거창군		22
39	거창읍 양평리	산167	임	853	853	853	거창군		32
40	거창읍 양평리	산203	구	99	79	79	거창군		31
41	거창읍 양평리	산205	구	26	26	26	국(기획재정부)		38
합		계		130,654	74,708	64,459		감)10,249	

# 노상 및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노상(북부사거리~중앙교) 및 거점 공영주차장(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일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3. 10. 31.

## 거 창 군 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 노상 및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 입찰내용

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위탁기간	예정가격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일원	50	09:00 ~ 18:00	2023. 11. 23.	32,437,000원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39	(운영시간 조정 가능)	~ 2026. 11. 22.	

- ※ 기타시설 : 공중화장실 1개소, 주차관제시스템 1식, CCTV 7대, 가로등 13개소 등
- ※ 입찰금액은 1년간 위탁금액을 기재하며, 부가세 포함 금액임
- ※ 정해진 주차구획 내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획 외로 주차를 유도하여 요금을 징수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됨은 물론 불법주정차단속 대상이 됨을 유의할 것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 납부(제출)기간 : 2023. 11. 01.(수) ~ 2023. 11. 07.(화) 16:00까지
  - 제출처 : 「온비드」 ([www.onbid.co.kr](http://www.onbid.co.kr))
-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23. 11. 08.(금) 10:00 거창군 건설교통과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 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http://www.onbid.co.kr>)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3. 주차장 운영 관련

- 위탁기간 : 2023. 11. 23. ~ 2026. 11. 22.(3년간)
- 주차장 운영시간 : 09:00 ~ 18:00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 주차요금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당	1일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 (주) 1.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 최초 30분으로 봄  
 2.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3. 주차 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계약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위탁 계약기간 동안에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요금징수, 주차 이외의 상행위 발생, 차량손실 및 관리상의 시설유지관리(운영기간 중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했거나 소모품등에 한함)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관리수탁자에게 있으며, 거창군은 이를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진다.

## 4. 입찰참가 자격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 가. 공고일 현재 거창군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군이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문의하여 등록 후 입찰가능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주차장관련 수탁금 미납법인 또는 개인은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입찰참가 방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6.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 (<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홈페이지 【입찰이용안내탭 또는 고객지원센터】 참고
-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에서 확인가능 함.
- 입찰시작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농협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칭은 「농협위탁」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의 집금계좌로 이체되고,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 미달일 때,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10. 낙찰자 결정 방법

-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 이상 입찰참여자 포함)와 계약 체결시에는 재입찰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 11.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전까지 아래서류를 거창군 건설교통과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한다.
  -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단, 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실증명” 으로 같음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법인인감)
  - 수탁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영수증(주차장 운영개시일까지 제출)
- ※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합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이상 입찰참가자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이 미달일 경우 재입찰합니다.

## 12.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위탁료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낙찰자 자격상실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창군의 입금계좌로 이체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주차장의 운영 개시 후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등록신청 및 수익사업 개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원본)은 주차장 운영 개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주차장 시설물 상태 및 주변도로, 교통여건,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현장 답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조례), 규정, 공고문등을 연계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비드 이용 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 입찰자는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안)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안)는 전자입찰 공고와 함께 거창군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례), 규정 확인 및 숙지사항  
 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 → 현행법령검색  
 나.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거창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940-3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위탁관리계약서(안)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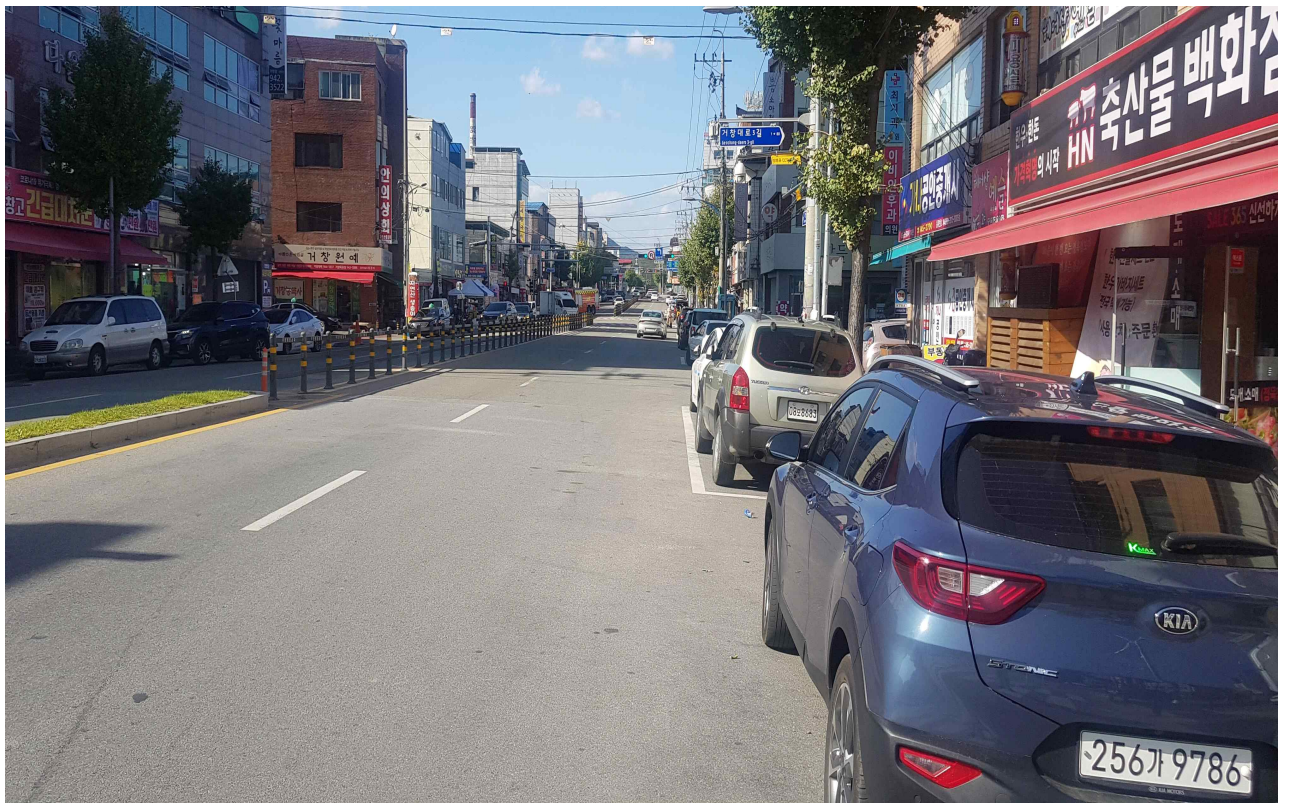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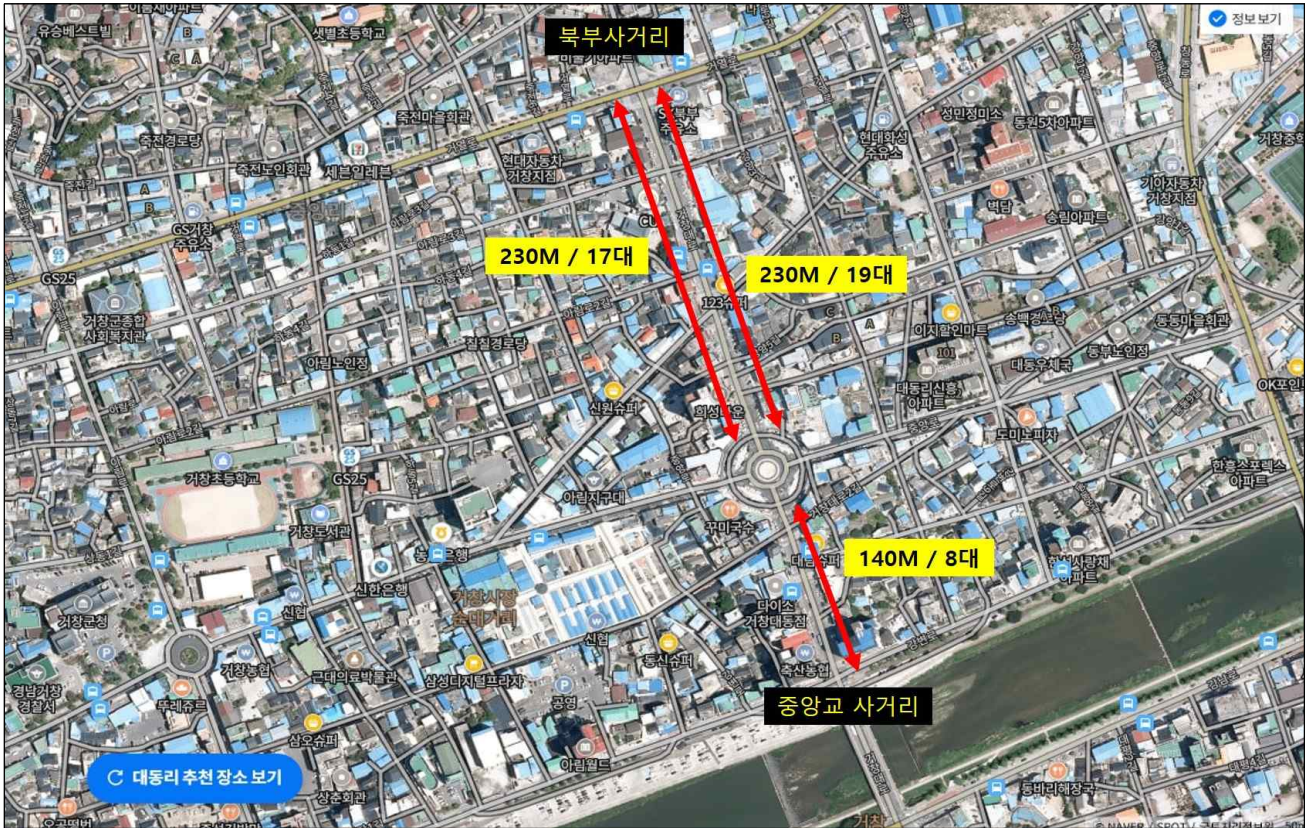
## 응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주차장 운영 수지분석 없이 응찰할 경우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응찰에 앞서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반드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거창군에서는 부당요금 청구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사례 발생 시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해약 사유가 될 경우에는 위탁료 전액은 거창군에게 귀속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운영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

거창읍 시가지 교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탁자 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을 “갑”이라 칭하고, 관리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관리수탁 대상 공영주차장의 표시)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50면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 39면  
(별첨1 :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시설내역)

## 제2조 (관리수탁기간 및 운영시간)

1. 관리수탁기간은 2023. 11. 23. ~ 2026. 11. 22. 까지로 한다.
2. 공영주차장은 주간만 유료 운영(단,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한다.  
단, 설·추석 연휴 기간은 무료 개방

## 제3조 (관리수탁사용료 및 납부방법)

1. “을”은 금원(금            원)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관리수탁 사용료반환)

납부된 관리수탁 사용료는 도시계획 사업시행 또는 주차장의 폐쇄 등을 제외 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 (계약이행보증금)

1. “을”은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관리수탁 사용료의 10/100을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계약 불이행시 “갑”에게 귀속한다.
2.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 제6조 (관리수탁자의 임무)

“을”은 주차장의 유지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

- (주차선 내 주차 유도, 월 주차 차량의 특정 주차면 장기점유 방지)
2. 주차장 구간 내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화단 등 주변 환경정리를 통해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3. 주차하는 차량 및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
  4. 공중도덕을 행하는 행위 금지
  5. 주차장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6. 수탁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금지
  7. 주차장법 및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8. 이용자에 대한 친절 봉사와 요금징수에 대한 설명
  9. 요금징수원의 복장 통일(제복, 모자 등)
  10.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11. 기타 민원 발생이 없도록 주차장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 제7조 (돌발사태시의 대응조치 의무 및 경비부담)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돌발사태 발생 시 및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1. 차량의 주차장 진입 중지 : “갑”의 지시가 있을 시
2. 주차차량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 “갑”의 지시가 있을 시

### 제8조 (주차장 일시 폐쇄에 따른 관리수탁 사용료 감경)

천재지변, 침수 등 돌발사태와 “갑”의 지시에 의하여 주차장을 일시 폐쇄할 시는 그 기간에 대한 관리수탁 사용료를 감경하여야 한다.

### 제9조 (주차요금의 징수)

“을”은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주차요금 적용의 시간구분)

운영시간 중 주간(09:00 ~ 18:00)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단, 운영시간은 여건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제11조 (주차요금 감면)

“을”은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 제12조 (주차장의 표시)

1. “을”은 설치된 주차선 내에서 수시 선형을 보완하여 깨끗하고 명확한 주차선의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
2. 주차장 및 주차장 안내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교통 안전표시를 준용하고 조례를 준수하여 한다.

### 제13조 (제세공과금 및 운영경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운영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 제14조 (주차거부 금지)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1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호우주의보, 경보 발령 등 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을 때

###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을”은 시설물 및 주차 중인 자동차의 도난, 훼손, 화재 또는 침수 등으로 일어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16조 (업무의 지도 감독 및 보고)

“갑”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대행 업무를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주차장의 용도 외 제공)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제공코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 (주차장의 폐지)

“갑”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 납부된 관리수탁 사용료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9조 (주차요금 변경 시 관리수탁 계약변경)

관리수탁 기간 중에 조례의 개정에 의거 주차요금이 변경 될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요금의 변경되는 비율에 의거 관리수탁 사용료(계약 이행 보증금 포함)를 산정하여 계약변경 한다.

### 제20조 (관리수탁의 양도 등 금지)

“을”은 제3자에게 관리수탁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한다.

### 제21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조례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본 계약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에는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계약취소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기타)

본 계약에 부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조건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해석에 있어 쌍방간의 의의가 있을 시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2023. 10. .

갑 : 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 (인)

을 : (인)

(별첨1)

##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시설내역

주차장명	면적 (m <sup>2</sup> )	주차면수 (면)	기타시설
계	2,474	50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1,946	50	공중화장실 1개소 주차관제시스템 1식 CCTV 1식(7대) 가로등 1식(13개) 등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	528	39	요금소 등

(별첨2)]

(제8조 제1항 관리)

<b>회 수 주 차 권</b>			
금		원정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운영 주차장에만 사용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거 창 군 수			

※ 전면 중앙에는 거창군 휘장표시

<b>정 기 주 차 권</b>			
금		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자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의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운영 주차장에만 사용			
3. 이 정기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거 창 군 수			

12cm

8cm

※ 전면 중앙에는 거창군 휘장표시

##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제공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민간부문의 의견 청취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 구성

3. 주요내용

-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신설(안 제8조)
  - 협의회의 기능(안 제9조)
  - 협의회의 구성(안 제10조)
  - 협의회의 운영(안 제11조)
-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 조문변경(안 제12조)

4. 예고기간 : 2023. 11. 1.(수) ~ 11. 20.(월)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다. 전화 055-940-3185, 팩스 055-940-3169, 이메일 jsw0327@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055)940-31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중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거창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3. 거창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치경찰사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계장 각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

- ④ 협의회는 안전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실무협의회)</b></p> <p>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p> <p>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p> <p>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p> <p>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lt;신 설&gt;</u></p>	<p><b>제12조(실무협의회)</b></p> <p>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u>구성·운영한다.</u></p> <p>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p> <p>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p> <p>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u></p> <p>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제9조(협의회의 기능)</u>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u></li> <li><u>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u></li> </ol>

<신 설>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의회 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거창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3. 거창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치경찰사무에 참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 제11조(협의회 의 운영)

① 협의회 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신 설>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계장 각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

④ 협의회는 안전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 2)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3)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5)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6)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7)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나.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 1) 제정목적을 정함(안 제1조)
- 2) 지원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조)
- 3) 신청자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함(안 제3조)

3. 제정조례·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5.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20. / 20일간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11. 20.(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3501, FAX: 055)940-3759

붙임 1.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 지원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1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보조금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 및 시설·단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시설·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개인정보 수집·이용 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b>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b></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p> <p>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p> <p>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p> <p><b>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b></p> <p>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p> <p>※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 )</p> <p><b>신청인성명 :</b> <span style="float: right;"><b>서명 또는 날인</b></span></p>
--	--

[붙임 1]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3. 8. 16.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 저출산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1. 반액감면
  -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7. ~ 2023. 11. 16. (20일간)

##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축산과

- 전화번호 : 055)940-8213, FAX : 055)940-811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b>3명</b>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p> <p>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b>2명</b>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p> <p>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공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 2018-160호) 제2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

### 수 도 사 업 소 장

1. 공 고 명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 2. 평가개요

가. 대상시설 : 거창가조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거창찌꺼기 처리시설, 거창분뇨처리시설

나. 관리대행자 :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주식회사

다. 계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라. 평가대상 기간 : 2023. 1. 1 ~ 6. 30.(6개월간)

마. 평가결과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055-940-8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